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권순국(Soonkoog Kwon)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초빙교수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	참고문헌
III.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 검증사례	ABSTRACT
IV. 무역기업의 FTA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	

국문초록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계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주제어 : FTA 관세특례법, 협정관세, 원산지검증, 직접운송, 원산지신고서, 인증수출자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FTA 발효 건수는 15건(52개국), 타결(가서명) 건수는 1건(중미 6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FTA 활용률과 계약상대국 간 교역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FTA가 우리나라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나, 이에 비례하여 원산지검증 건수 역시 FTA 발효 건수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에서 실시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업체 수 기준으로 2012년 277개에서 2015년 1,038개로, 원산지증명서 기준으로는 2012년 1,962건에서 2015년 13,76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업체 수 기준 2012년 178개에서 2015년 294개로, 원산지증명서 기준으로는 2012년 264건에서 2015년 1,744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협정별 원산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정금액은 한·EU FTA(919억 4,200만 원), 한·미국 FTA(442억 7,300만 원), 한·아세안 FTA(390억 8,100만 원), 한·EFTA FTA(118억 4,4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

이러한 원산지검증의 증가는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의 입장에서 FTA 협정(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FTA 협정과 국내 이행법(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 기준을 파악하여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인 FTA 확대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이론적이며 실무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중 본 논문의 대상인 원산지검증(조사)과 관련된 연구로 유광현·김현철·신성식(2011)은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를 위한 관세특례법의 개정사항을 연구하였으며, 정재완(2012)은 FTA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합리적 FTA 이행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만길·정재완(2013)은 한국, 미국, EU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원산지 검증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윤준웅·이춘수(2015)는 원산지충족요건 유형별 원산지검증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취약요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병락·임성수(2015)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계약상대국의 지리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세 개 군집으로 분류하고, 각 군집의 원산지 검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하충룡(2015)은 FTA 특혜관세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관세법체계와 관련 미국관례 분석을 통한 함의를 제시하였고, 배명렬(2016)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과 사례를

1) 관세청, 관세연감, 2016.; 김덕중·김희호,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무역학회지』, 제4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7, pp.80~83.

통해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관세청에서 적발한 FTA 특혜관세 위반유형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인증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와 비당사국(제3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관련 위반사례, 직접운송 요건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 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연구하여 해당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II장에서는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이 되는 FTA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 검증사례를 검토하고, IV장에서는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의 연구를 바탕으로 무역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각종 논문, 연구보고서, 관련 통계자료 등을 참조한 문헌연구와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의 법적 기준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II.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

1. FTA 협정의 기준

기업이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요건, 품목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 원산지증명 요건 등과 같은 개별 FTA 협정에서 규정한 기본 전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거래당사자는 상호 계약관계인 수출입자와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생산자를 말하는데, 수출입자는 수출입국 내에 소재하고 FTA 특혜를 위한 원산지 관련 기록 및 자료의 보관,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시 피검증자이며 자료제출 의무자이다. 물품의 생산자는 물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실질적으로 보관 및 확인할 의무가 있다.²⁾ 한·칠레 FTA상의 수출(입)자는 “수출(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수입)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상품수출(수입)에 대한 기록유지

2) 이명구·정재완·정재호, 「FTA 이해와 활용(제2판)」, 청람, 2017, pp.210~211.

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하여(한·칠레 FTA 제5.1조), 생산자는 “상품을 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한·칠레 FTA 제4.1조).

협정국 간에 소재하는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무역거래는 수출자가 명확하나 비당사국의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발호 FTA 가운데 한·칠레, 아세안, 페루, 중국, 베트남과의 협정의 경우 수출계약국이 아닌 비계약국에서 송품장을 발급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송품장을 발급한 제3자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³⁾

품목요건은 특혜관세는 협정당사국간에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양허한 품목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것으로, 협정별·국가별·연도별로 품목과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서는 부속서에 당사국별 관세양허표에 HS 코드별로 양허유형을 명시하고 있다.⁴⁾

원산지상품 요건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인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품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상품의 원산지가 협정상대국 이어야 한다. 한·미국 FTA 상의 원산지상품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섬유 또는 의류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상품이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에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한·미국 FTA 제6.1조).

직접운송 요건⁵⁾은 해당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운송 도중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 특혜를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물품이 비당사국(제3국)을 거치더라도 제3국에 있는 동안 원상태를 유지하거나,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인정한다.⁶⁾ 직접운송 요건의 규정형식은 동 요건을 두면서 예외로 제3국 경유시 허용되는 작업범위를 규정하는 유럽형과 동 요건을 두지 않고 제3국에서의 작업범위만을 규정하는 미주형이 있는데, 미주형이 유럽형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 한·

3) 이영달, 「한·중 FTA 전략적 활용을 위한 FTA 협정 및 법령해설」, 세인북스, 2016a, p.97.

4) 상계서, p.103.

5)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원칙에 직접운송원칙을 두는 이유는 역내 무역 및 운송업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국가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운송경로의 복잡화에 따른 제3국 물품의 역내산 둔갑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391.

6) 이명구·정재완·정재호, 전계서, p.213.

7) 이영달, 상계서, 2016a, p.113.

EU FTA상의 직접운송은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 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 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한·EU FTA 제13조).”

원산지증명 요건은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주체에 따라 기관발급(한·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중국 등)과 자율발급(한·칠레, 미국, EU, EFTA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급서식은 기관발급의 경우 통일서식을, 자율발급의 경우 자율 또는 권고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EU, EFTA, 터키 등은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원산지증명을 하고 있다.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 문안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⁸⁾

2. FTA 관세특례법의 기준

1) FTA 관세특례법의 연혁

FTA의 발효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생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적용할 수 있으나 협정이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거나, 국내법령에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이 국내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FTA 이행에 필요한 이행절차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⁹⁾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와의 FTA 발효에 따른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2004년 4월 1일 시행)중이었는데, 이후 다수의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발효시키면서 개별 이행절차법을 만들 경우 입법적·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국내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기본법 방식의 입법추진이 필요하였다.¹⁰⁾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공포하고,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포르 FTA 발

8) 상계서, pp.217~218.

9) 성윤갑,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 p.111.; 이영달, “FTA 관세특례법령 전부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설”, 「계간 관세사」, 통권 181호, 한국관세사회, 2016b, p.61.

10) 이영달, 상계자료, p.61.

효를 기점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FTA 관세특례법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2호로 제정된 후,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25호로 제6차 전부개정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¹¹⁾. 제6차 전부개정은 FTA 초기 협정을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법내용과 체계의 문제점을 개정하였다. 조문순서를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규정하고, 기존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편제에 장(章)을 도입하여 주요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 및 추가 하였다. 또한, FTA 항목별 일반원칙과 예외사항을 최대한 정리하여 규정하였다.¹²⁾

<표 1> 제6차 FTA 관세특례법의 주요개정 내용

공포일	주요개정 내용
2015.12.29 (법률 제136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관세 적용의 절차에 따른 장(章) 편제의 도입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증명의 일반원칙 명확화(제6조 및 제10조) • 원산지결정기준 중 직접운송요건의 명확화(제7조)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2조)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제17조 제8항 및 제9항) •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제21조 제3항)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제37조) •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제13조) •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 마련(제36조)

자료출처 : 이종익·박병목(2016)

2) FTA 관세특례법의 적용기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FTA 관세특례법 제8조).

그리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

11)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71호로 제1차 일부개정,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8호로 제2차 일부개정, 2011년 6월 30일 법률 제10806호로 제3차 일부개정,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07호로 제4차 일부개정,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2호로 제5차 일부개정 되었다.
 12) 이종익·박병목,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세경사, 2016, pp.1~3.; 이영달, 전개자료, 2016b, p.65.

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

그리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 거주 수출자 및 생산자 포함),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만약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건에 대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 수출자 등)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FTA 관세특례법 제35조).

3.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의 관계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동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동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FTA 관세특례법 제3조).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법의 특례사항은 원산지의 결정과 증명, 협정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원산지검증(조사) 절차 등으로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관세의 부과·징수, 감면, 환급, 외국물품의 관리, 수출입통관 등은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FTA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세법과 FTA가 상충될 경우 법적용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제정된 법이나 체결된 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동 법 또는 관세법이 FTA와 상충되는 경

우 법적용의 일반원칙을 따르지 않고 FTA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¹³⁾

FTA를 활용한 무역의 궁극적 목표는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통해 계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한 물품에 대해 관세당국은 원산지검증을 실시한다. 이러한 FTA 협정관세대우 신청과 사후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이 FTA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과 같은 국내 이행법규이다.

Ⅲ.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 검증사례

FTA 협정관세 위반유형별 추정현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결정기준, 특혜대상품목 요건,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등의 순으로 위반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반유형 중 직접운송 요건 위반 사례, 거래당사자 요건중 비당사국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례와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FTA 특혜관세 위반유형별 추정현황

(단위: 업체 수, 백만 원)

위반유형	2013		2014		2015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원산지결정기준	92	17,874	57	24,336	97	18,109	246	60,319
거래당사자 요건*	129	13,019	246	25,228	268	25,687	643	63,934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1	88	7	12,238	-	-	8	12,326
특혜대상품목 요건	59	5,232	81	4,208	79	3,310	219	12,750
직접운송 요건	8	4,968	4	2,917	17	3,598	29	11,483
기타**	41	4,248	47	7,187	85	4,363	173	11,550
소계	330	45,429	442	76,114	546	55,067	1,318	176,610

주 : * 미인증수출자 및 비당사국(제3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 자료제출 거부 또는 자료보관 위반, 상대국의 미회신,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등
자료출처 : 관세연감(2016); 이영달(2016b) 재인용

13) 이명구·정재완·정재호, 전계서, p.278.

1. 직접운송원칙 위배여부 사례¹⁴⁾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소재 판매자로부터 계약상대국 소재 수출자가 생산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 받았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신청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먼저 청구법인은 판매자로부터 수출자가 생산한 의류를 생산지인 계약상대국로부터 한·EU FTA 비당사국을 거쳐 수입하다가,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비당사국으로 운송된 쟁점물품을 다시 계약상대국으로 재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송하기로 거래 약정을 변경하였다.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로서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물품은 비당사국으로 보세운송 된 후 국내로 반출되지 않고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계약상대국으로 재운송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되었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비당사국으로 보세운송시 수출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계약상대국으로 재반입시 한·EU FTA의 재반입 규정에 따라 원산지지위를 획득하였으므로 최종 출발지인 계약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쟁점물품을 운송한 목적이 판매자의 법인세 납부 목적이라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EU FTA상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만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물품이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였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한·EU FTA상 특혜관세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된 원산지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데, 쟁점물품은 계약상대국 수출자가 생산하여 비당사국 판매자에게 운송된 후, 판매자가 다시 계약상대국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운송하는 2단계의 거래 및 운송이

14) 조심2016관0123, 2016.12.16

존재하는바, 쟁점물품은 최초 계약상대국으로 운송되었을 때 수출자와 판매자간 거래는 종료되고, 판매자와 청구법인간 거래는 쟁점물품을 비당사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운송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한·EU FTA 적용대상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판매자에게 운송한 다음, 다시 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청구법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에 해당되지 않고, 이 건 송품장은 수출자가 아닌 판매자가 발행한 것이어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이 단일의 송품장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상 직접운송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계약상대국에서 출발하여 비당사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운송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을 운송한 목적이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판매자의 경제적인 이유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협정관세율의 적용 배제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비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되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 계약상대국에서 운송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였으므로 직접운송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한·EU FTA에서 제3국 거래(비당사국에 소재한 판매자가 당사국에 소재한 원산지물품을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제3국 거래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판매자간에 1차 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상업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송품장과 해당 물품의 직접운송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는 점과 이 건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제3국 소재 판매자에게 물품이 수출판매 된 상태에서 다시 판매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재판매하여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이 운송되는 거래와 달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에게 판매가 예정된 상황에서 계약상대국으로부터 비당사국 세관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되었다가 당일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계약상대국으로 보세운송 된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선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보세운송서류와 비조작증명서가 순차적으로 발급되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는 점과 비당사국으로부터 계약상대국으로 쟁점물품 재반입시 한·EU FTA 의정서의 영역원칙에 따라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비당사국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례¹⁵⁾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계약상대국 소재 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관세율할당물량 추천 0%/미추천 33.6%)를 적용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제3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 가능한데, 쟁점물품은 이미 1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견이나,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자료로 쟁점물품의 직접운송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천을 받은 물량에 대하여는 할당관세율(0%)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단순 업무실수에 기인하여 비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협정관세 적용오류들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경정되었으므로 협정관세를 재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하지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비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였고,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과세전통지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뒤늦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15) 조심2016관0004, 2016.06.30

이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일부에 대하여 한·미 FTA 관세율할당 추천을 받은 물량에 대해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세율(FUS6 0%)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FTA 추천세율은 한·미 FTA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만 인정되므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을 받은 쟁점물품은 FTA 추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생산자가 소급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기간 이내에 다시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점과 처분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시점에 체약상대국 소재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세액이 정정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의 추천세율은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이상,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일지라도 추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유효여부 사례¹⁶⁾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소재 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비당사국 소재 판매자를 통하여 수입하면서, 체약상대국 소재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서류 등을 근

16) 조심2016관0109, 2016.11.28

거로 한·EU 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선하증권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었고,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먼저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3자가 단순히 원산지 신고문안을 대신하여 기재한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EU FTA 원산지규정에서 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증수출자의 구체적·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제3자가 기재행위만을 대신한 경우는 인증수출자가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에서 인증수출자인 계약상대국 생산자는 원산지 신고문안 및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자체 원산지확인서 등을 운송인 등에게 제공하여 선하증권에 원산지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송인 등이 기재행위만을 대신한 것이므로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하증권은 한·EU FTA 의정서에 따라 원산지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업서류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선하증권은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한다. 한·EU FTA 의정서에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하증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EU FTA 의정서에 의하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보관의무 및 원산지검증의 피검증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신고문안은 인증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작성하거나, 비당사국 판매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운송인이 작성한 선하증권을 인증수출자에게 다시 전달하여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는 동 법인이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한·EU FTA 의정서에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선하증권에는 제품의 기본적인 모델, 규격,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절한 상업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 판단

한·EU FTA 의정서에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의 지시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원산지 신고문안 등이 기재되어 작성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선하증권은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운송인이 화물의 운송·선적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증서로서 통상적으로 선하증권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계약상대국 소재 인증수출자는 포장명세서에 의하여 용이한 방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청구법인은 사자(使者)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선하증권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IV. 무역기업의 FTA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

1. 직접운송원칙의 유효요건 확인

직접운송원칙 위배여부 사례의 쟁점은 수입자가 한·EU FTA 규정상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한 것이다.¹⁷⁾ 동 사례의 경우 한·EU FTA 제12조에 따라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17) 동 사례와 관련된 한·EU FTA의 법적 기준은 제1조 카항의 탁송화물, 제12조 영역원칙, 제13조 직접운송, 제15조 일반요건,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상의 기준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과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동 법 사무처리고시 제37조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제13조에 따라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하였고,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쟁점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 원칙상 물품의 원산지인정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나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동 법 사무처리고시 제37조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받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한다. 동 사례의 경우 수입자가 한·EU FTA와 FTA 관세특례법 규정상의 직접운송 요건과 관련된 예외적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통해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직접운송원칙의 유효요건을 확인하여 이에 대비할 경우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2. 협정관세 적용기준의 확인

비당사국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례의 쟁점은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관세할당추천물량¹⁸⁾에 대해서는 추천세율 적용 여부이다.¹⁹⁾ 동 사례의 경우 한·미 FTA 제6.18조에 따라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으며, 제6.19조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장의 어떠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동

18) 관세할당물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한·미국 FTA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

19) 동 사례와 관련된 한·미국 FTA의 법적 기준은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제6.18조 검증, 제6.19조 수입관련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상의 기준은 제9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의 신청 등과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6호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동 법 사무처리고시 제29조 신청서류 심사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동 법 사무처리고시 제29조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동 사례의 경우 기업이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 규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요건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 확인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여부 사례의 쟁점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선하증권²⁰⁾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²¹⁾ 동 사례의 경우 한·EU FTA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 또는 전체 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물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동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²²⁾을 기재하여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제3항에서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

20)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동 증권의 주요한 기능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권원증권이며, 운송물의 인도 및 운송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증권이다. 정영석, 「선하증권론 : 법과 실무」, 텍스트북스, 2007, pp.23~29.

21) 동 사례와 관련된 한·EU FTA의 법적 기준은 제15조 일반요건,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17조 인증수출자, 제23조 원산지증명 및 증명서류의 보존, 제27조 원산지증명의 검증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상의 기준은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제15조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보관 등과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제15조 제3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2)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Place and date),(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지증명서는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²³⁾로 하고 있다. 동 사례의 경우 한·EU FTA와 FTA 관세특례법 규정상의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며,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 상업서류에 선하증권은 기재사항의 주요 내용을 고려해볼 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4. 조세심판청구제도의 적극적 활용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에서 관세당국으로부터 FTA 협정관세 배제 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심판청구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취소 처분 등을 받아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동 제도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²⁴⁾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각하(却下)²⁵⁾, 기각(棄却)²⁶⁾, 인용(認容)[취소·경정 또는 재조사]²⁷⁾ 등으로 분류된다(조세심판원).

제3장의 직접운송원칙 위배여부 사례의 경우는 취소 결정이 되었으며, 비당사국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례와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여부 사례는 기각 결정이 났다. 즉, 처분청(관세당국)의 협정관세 배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법인(기업)의 주장이 정당할 경우 취소 결정이 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검증 관련 업무는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에 명시된 규정의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기업은 이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112조 관세조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준용한 원산지검증을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 받을 권리를 활용하여야 한다(FTA 관세특례법 제

23)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의 주요 기재사항은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개수·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선하증권 발행통수 등이다. 정영석, 전게서, p.36.

24)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조세심판원).

25) 각하는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이유 등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조세심판원).

26) 기각은 청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본안심리에 의하여 청구 주장의 내용 및 이유 등을 검토·심리하고 그 불복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 등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조세심판원).

27) 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불복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 경정, 재조사 하도록 하는 결정이다(조세심판원).

17조 제8항). 이는 원산지검증을 받는 당사자는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전반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원산지에 관한 제약상대국의 검증 시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다.²⁸⁾

5.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의 법 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 대비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 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는 특정기준에 대한 협정과 관세특례법의 상충문제, 특정사안에 대한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의 해석기준 상이로 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 FTA 협정이나 관세특례법 중 한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적용의 제한사항인지, 해제사항인지 등에 따라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한다. 일례로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대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이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 혹은 선적일 직후에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협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²⁹⁾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의 기준에 대한 법해석 과정에서 무역기업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 적용 기준을 완화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반해 관세당국은 부당한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중 하나인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여부 사례에서 보듯이 원산지신고서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서류에 대해 기업은 협정상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역관행 및 관련 법령상의 용례 등을 고려하여 선하증권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관세당국은 선하증권에는 제품의 기본적인 모델, 규격,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과 같은 운송서류는 FTA 활용 무역에서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 확인서류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 상업서류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28) 이종익·박병목, 전게서, p.157.

29) 상게서, pp.16~17.

V. 요약 및 결론

FTA 협정관세는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본 연구는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수입물품과 관련된 심판청구 검증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EU FTA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한 물품의 직접운송원칙 유효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직접운송원칙 위배여부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자가 직접운송요건과 관련된 예외적인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통해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다. 즉,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국 내 또는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둘째, 한·미 FTA상의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준 등과 같은 법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당사국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례에서 보듯이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가 된다. 셋째, 한·EU FTA상의 원산지신고서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여부 사례에서 보듯이 한·EU FTA상의 원산지신고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며,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 상업서류에 선하증권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넷째,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동 제도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의 법 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특정기준에 대한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의 상충문제, 특정사안에 대한 기업과 관세당국의 해석기준 상이로 인한 경우로 발생할 수 있는데, 기업은 불일치와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불일치에 따른 해결방법을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의 수입자가 계약상대국으로 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받아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례에 대해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는바,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수출물품 가운데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서 원산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협정관세 배제를 한 사례를 분석하여 FTA를 활용하는 무역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덕중·김희호,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무역학회지』, 제4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7.
- 김만길·정재완,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 배명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 성윤갑,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
- 유광현·김형철·신성식,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를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 윤준웅·이춘수,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 이명구·정재완·정재호, 『FTA 이해와 활용(제2판)』, 청람, 2017.
- 이병락·임성수, “군집에 기초한 FTA 원산지검증의 분류”, 『무역연구』, 제11권 제5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 이영달, 『한·중 FTA 전략적 활용을 위한 FTA 협정 및 법령해설』, 세인북스, 2016a.
- , “FTA 관세특례법령 전부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설”, 『계간 관세사』, 통권 181호, 한국관세사회, 2016b.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 이종익·박병목,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세경사, 2016.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정영석, 『선하증권론 : 법과 실무』, 텍스트북스, 2007.
- 정재완,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2.
- 하충룡, “한·미 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관세의 동향과 합의”,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
- Abreu, M. D,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13-05, World Trade Organization, 2013.
- Cadot, O. et al., *The Origins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Estevadeordal, A. and Suominen, K., *Gatekeepers of Global Commerce: Rules of Origin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8.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l/1/Text_of_Agreement_eng.pdf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Full_Text.pdf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eng.pdf
- Heetkamp, A. van de., and Tusveld, R., *Origin Management: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s*, Springer, 2011.
- Inama, S.,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Rohini, A.(E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Stocker, W.,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CO Research Paper*, Vol. 12,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1.
- Tanaka, A., World Trends in Preferential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WCO Research Paper*, Vol. 20,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Soonkoog Kwon*

The FTA conventional tariffs shall be applied that the imported goods are subject to the conventional tariffs under any agreement, and the origin of the good is the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rigin under any agreement. An importer who intends to b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shall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customs house before the relevant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the benefits of FTA conventional tariffs. The Korean companies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effective requirements for direct transport of goods through non-parties under the Korea-EU FTA, confirm the criterion for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riffs such as certificate of origin and claims for ex post facto conventional tariffs under the Korea-US FTA, confirm the issuer of origin declaration and the recognition of origin declaration of bill of lading under the Korea-EU FTA, utilize the tax appeal system by deni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and prepare the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legal standard under FTA and FTA Special Customs Act.

Key Words : FTA Special Customs Act, Conventional Tariffs, Origin Verification, Direct Transport, Origin Declaration, Approved Exporter

* Visiting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and Trade